

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 1. 개정이유

구정 및 구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 사건을 중요소송에 포함하여 행정심판에서부터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다양화된 행정사건에 적극적 응소를 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  
(안 제10조제5항)
- 나. 중요소송 지정에 행정심판 등을 포함하여 신설(안 제27조제4호)
- 다. 소송 진행 상황에 따른 수임료 지급 기준 구체화(안 제28조제1항)
- 라. 중요소송 특별승소사례금 지급 기준을 최대 5천만원으로 하고,  
소송과 행정심판으로 나누어 지급 기준안 설정(안 제29조제3항 ~ 제5항)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1) 「행정심판법」 제18조(대리인의 선임)

###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### 다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- 2) 입법예고 : 2015.11. . ~ 2015.12. .(20일 이상)
- 3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폐지 없음
- 4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5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#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(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)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는 본 규칙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.

제2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구의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심판 등 행정심판 사건 및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 사건

제2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송 취하 등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29조제3항 본문 중 “1억원”를 “최종심에 대해서 5천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1억원”을 “소송물가액의 1%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중요소송으로 지정한 소송 사건의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사건은 소송물가액을 10억원으로 보고, 중요 행정심판으로 지정된 사건은 소송물가액을 2억원으로 본다.

제2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의 심급별 승소사례금은 별표의 착수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송비용등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부터 적용한다.

[별표]

소송비용 지급기준  
(제28조제1항 관련)

| 구분  | 내 용   | 지급기준   |  |   |
|---|---|--|--|---|
|   |   | 착수금(원)   | 승소사례금  | 공통경비  |
| 민사<br>·<br>행정<br>소송<br>·<br>헌법<br>재판<br>소<br>관할<br>심판 | 1. 신청사건<br>1) 변론이 없는 경우<br>2) 변론이 있는 경우<br><br>2. 본안사건(소송물가액별)<br>1) 3천만원 미만<br>2) 3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<br>3)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<br>4) 1억원이상<br>5) 중요사건(서대문구 행·재<br>정에 큰 영향 예상사건)<br><br>3. 환송심 | 200,000<br>400,000<br><br>1,000,000<br>1,500,000<br>2,500,000<br>4,000,000<br>1,000,000<br>~<br>4,000,000<br><br>원심의 1/2 | 1. 승소비율이 50% 이상 60% 미만인 때에는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<br>2. 승소비율이 60% 이상 80%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10%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<br>3. 승소비율이 80% 이상인 때에는 그 비율에 20%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<br>4. 상대방의 소취하(쌍불취하 포함)시는 착수금의 반액(단, 조건부취하는 제외한다)<br>5.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은 지급하지 않음 | 1. 인지대 : 실비<br>2. 송달료 : 실비<br>3. 감정·감정비 : 실비<br>4. 출장여비 :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<br>5. 기타 : 실비 |
| 형사<br>사건  | 1. 개인 단독사건<br>2. 다수 관련사건<br>3.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  | 1,000,000<br>1,500,000<br>2,500,000  | 1. 고소·고발시 검찰수사 결과 80%이상 기소될 경우 20%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<br>2. 피 고소·피고발시 검찰수사 결과 80%이상 불기소될 경우 20%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<br>3. 상대방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착수금의 반액  | 1. 출장여비 :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<br>2. 기타 : 실비   |

- ※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, 직무관련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에 의함.
- ※ 제28조제5항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은 승소사례금 없이 일반 신청사건의 1/4을 지급함.
- ※ 형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수임료 등의 소송비용은 형사사건을 준용함.
- ※ 제10조제5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수임료 등은 신청사건에 준하여 지급함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p>제10조(소송수행방침 결정)<br/>① ~ ④ (생략)<br/><u>&lt;신설&gt;</u></p>  | <p>제10조(소송수행방침 결정)<br/>① ~ ④ (현행과 같음)<br/><u>⑤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(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)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는 본 규칙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.</u></p> |
| <p>제27조(중요소송 지정) 정책기획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의거 제26조에 따라 소송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.<br/>1. ~ 3. (생략)<br/><u>&lt;신설&gt;</u></p> | <p>제27조(중요소송 지정)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1. ~ 3. (현행과 같음)<br/><u>4. 구의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심판 등 행정심판 사건 및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 사건</u></p>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제28조(수임료 등) 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, 그 밖의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되,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. 소송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.<br/><u>&lt;단서 신설&gt;</u></p>               | <p>제28조(수임료 등) ①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<u>다만,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</u></p>  |

|   |  |
|---|--|
| <p>② ~ ⑧ (생략)</p>   | <p><u>기 전에 소송 취하 등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수입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~ ⑧ (현행과 같음)</p>  |
| <p>제29조(중요소송 지정사건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특별승소사례금은 최종심 판결 확정시에 <u>1억원</u> 범위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.</p> <p>1. 승소비율(화해와 조정을 포함한다)이 60% 이상일 경우 <u>1억원</u>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④ <u>중요소송으로 지정한 소송사건의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사건은 소송물가액을 10억원으로 본다.</u></p> <p>&lt;신설&gt;</p> | <p>제29조(중요소송 지정사건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br/>----- <u>최종심에 대하여 5천만원</u><br/>-----<br/>-----</p> <p>1. -----<br/>----- <u>소송물가액의 1%</u>-----<br/>-----</p> <p>2. ~ 4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중요소송으로 지정한 소송사건의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사건은 소송물가액을 10억원으로 보고, 중요 행정심판으로 지정된 사건은 소송물가액을 2억원으로 본다.</u></p> <p>⑤ <u>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의 심급별 승소사례금은 별표의 착수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.</u></p> |

## 관계 법령

### □ 행정심판법 [시행 2014.5.28] [법률 제12718호, 2014.5.28, 일부개정]

제18조(대리인의 선임) ① 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.

1. 청구인의 배우자,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
2.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
3. 변호사
4.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
5.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

② 피청구인은 그 소속 직원 또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.